

## 2026 꿈의 스튜디오 '서천' 단원 모집 공고

(재)서천문화관광재단에서는 아동·청소년이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시각예술 활동을 탐색하고 창작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「2026 꿈의 스튜디오」 단원을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아동·청소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5일

(재)서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### ※ 꿈의 스튜디오란?

꿈의 스튜디오는 아동·청소년이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시각예술 활동을 탐색하고 실험하며, 자신만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창작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은 물론 자기표현력과 사회적 성장을 함께 이루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.

### 1 모집 대상 및 인원

○ 모집대상: 서천군 거주, 소재 초등학교 2학년~고등학교1학년(2026년 기준)

※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

○ 모집인원

| 구분  | 모집교육                 | 모집인원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인원 |                      | 30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경계없이 그림이 태어나는 곳 (회화) | 10명  |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인근 참여자 우선 모집<br>※ 자차 이동 가능 시 다른 지역 신청 가능 |
|     | 흙손 예술 놀이터 (도예)       | 10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흙빛 마음 공방 (공예)        | 10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 운영 개요

- 운영기간: 2026. 7. 16.(목) ~ 11. 19.(목)
- 운영일시: 16:00~19:00 / 3시간
- 교육장소: 예술가 작업실
- 지원내용: 교육비, 통학 차량 등 일체 무료

| 교육                   | 장소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흙손 예술 놀이터 (도예)       | 서면 월하성길 35-3 |
| 경계없이 그림이 태어나는 곳 (회화) | 군청로 40번길 9   |
| 흙빛 마음 공방 (테라코타)      | 군청로 53-1     |

## 3 전형절차 및 기준

- 전형절차 및 일정

| 구분      |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류 접수   | 2026. 6. 15.(월) ~ 6. 30.(화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차 서류심사 | 2026. 7. 1.(수)              | · 서류 적정성 자체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차 면접심사 | 2026. 7. 4.(토)              | · 보호자 동반 면담 보호자 필참<br>· 면접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예정 |
| 최종 결과발표 | 2026. 7. 8.(화)              | · 교육 참여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 설명회  | 2026. 7. 11.(토)             | ·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선발기준

- 교육지원의 필요성, 지원자 및 보호자의 활동의지 등
- 취약계층(증빙서류 필수), 정기교육 전 회차 참여가 가능한 지원자 우선 선발

## 4 제출 서류

| 구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내용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필수서류          | ① 단위 지원신청서 1부[서식1]              | 별첨 지정서식 사용       | 서식 변형 불가      |
|               | ② 초상권 이용 승낙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[서식2]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③ 보호자 동의서 1부[서식3]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                   | 서천군 거주 여부 확인     |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|
| 증빙서류<br>(해당자) | ⑤ 사회취약계층 해당자 증빙서류 1부            | [참고1] 취약계층 범주 확인 | 취약계층 우선선발 예정  |

※서류발급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(보건복지콜센터 ☎129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참고

## 5 접수 방법

---

- 이메일 접수: rin0122@seocheonctf.or.kr
- 방문 접수: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56번길 17 2층
- 유의사항
  - 마감일 15:00 도착분까지만 유효 (도착시간 기준)
  - 마감일 18:00까지 접수 완료 문자 발송 예정, 해당 기한 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유선 확인 필수

## 6 유의사항

---

- 본 사업은 모집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, 선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접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면접심사에 불참할 경우 교육 참여가 불가합니다.
- 신청서는 1인 1회 제출만 가능하며, 중복 신청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차량 운행은 신청서에 사전 작성한 승·하차 장소를 기준으로 운영되며, 참여 아동·청소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보호자의 협조와 지도가 필요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서류는 일괄 제출 원칙이며,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,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모집에 관한사항이 무효가 되며, 선발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서천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(041-957-903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참고 1] 취약계층 범주

| 순번 | 구분                   |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     | 수급자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차상위계층               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조손 가정의 자녀 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소년·소녀 가장  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다문화 가정의 자녀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    |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      |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도서벽지 거주자             | 재학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장애아동, 장애인의 자녀        | 장애인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다자녀 가정의 자녀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보훈자의 자녀              |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특수교육대상자              |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         | 재원확인 증명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 | 학교장 추천자              |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| 학교 밖 청소년             | 제적증명서, 미진학사실확인서, 정원외관리증명서, 검정고시 수험표 중 택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 | 느린학습자<br>(경계선 지능 아동) |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-79점이거나<br>DSM-IV(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) 기준<br>71~84점(표준편차 -1과 -2사이)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<br>(예: 심리학적평가보고서, 진단서 등) |

[참고 2]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 사항

| 구분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국민기초생활<br>보장수급자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</li><li>- ‘수급권자’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</li><li>※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/정부24 발급 가능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차상위계층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</li><li>-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<br/>(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”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) ※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</li></ul> <div>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/ (단위: 원)</div>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1인가구</th><th>2인가구</th><th>3인가구</th><th>4인가구</th><th>5인가구</th><th>6인가구</th><th>7인가구</th></tr><tr><td>기준중위소득(50%)</td><td>1,282,119</td><td>2,136,613</td><td>2,761,282</td><td>3,247,369</td><td>3,685,614</td><td>4,098,907</td><td>4,512,199</td></tr></table> | 구분        | 1인가구      | 2인가구      | 3인가구      | 4인가구      | 5인가구      | 6인가구 | 7인가구 | 기준중위소득(50%) | 1,282,119 | 2,136,613 | 2,761,282 | 3,247,369 | 3,685,614 | 4,098,907 | 4,512,199 |
| 구분                | 1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인가구      | 3인가구      | 4인가구      | 5인가구      | 6인가구      | 7인가구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기준중위소득(50%)       | 1,282,1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136,613 | 2,761,282 | 3,247,369 | 3,685,614 | 4,098,907 | 4,512,199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조손 가정의 자녀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소년·소녀 가장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 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다문화 가정의 자녀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</li><li>- 결혼이민자(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)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(단,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(모)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)</li><li>-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북한이탈주민 또는<br>그 자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</li><li>- ‘북한이탈주민’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한부모 가족<br>보호대상자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한부모 가족 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</li><li>- ‘한부모가족’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,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,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</li><li>※ 일반 모자가족(모가 세대주) 또는 부자가족(부가 세대주)과는 구분 필요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도서벽지 거주자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·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</li><li>- ‘도서·벽지’란 지리적·경제적·문화적·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, 산간지역/낙도/수복지구/접적지구/광산지구를 말함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장애인의 자녀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다자녀 가정의 자녀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다자녀 가정(2자녀 이상) 자녀」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보훈자의 자녀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교육지원대상자 외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※ 교육지원대상자 외 ‘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’ 제출자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특수교육대상자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</li><li>-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</li><li>- 시각장애 / 청각장애 / 정신지체 / 지체장애 / 정서·행동장애 / 자폐성장애(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) / 의사소통장애 / 학습장애 / 건강장애 / 발달지체 /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아동복지시설<br>재원자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</li><li>- ‘아동복지시설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학교장 추천자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 장이 판단·추천한 자 ※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</li><li>-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(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)</li><li>-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</li><li>- 부양의무자의 질병·사고·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,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</li><li>-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·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학교 밖 청소년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’</li><li>-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</li><li>-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</li><li>-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경계선 지능<br>아동·청소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-79점이거나 DSM-IV(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) 기준 71~84점(표준편차 -1과 -2사이)에 해당하며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업능력, 정서적 어려움,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·청소년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